2022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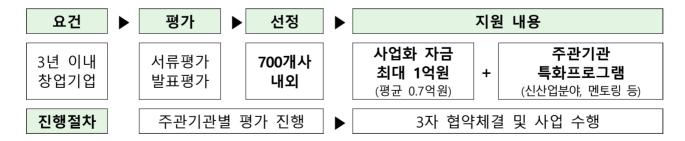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22년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시 '기업인증'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에 ^①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②SCI기업실명인증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 □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22. 5월 ~ '23. 2월 예정)
- □ **선정규모** : 700개사 내외 (일반 분야 600개사, 그린 분야 100개사 내외)
 - ※ 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참고 2] 참조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③′19.2.25. ~ ′22.2.24.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분야

○ 일반분야 또는 그린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분야별 창업기업 지원규모(안) >

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일반 분야	■ 그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창업 아이템(신산업분야 포함*) * [참고5] 참조 신산업 예시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 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시스템 반도체, ⑨ 자율주행차, ⑩ 바이오, ⑪ 의료기기, ② 기능성 식품, ⑤ 드론개인이동수단, ④ 미래형 선박, ⑥ 재난/안전, ⑥스마트홈 등	60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 을 해당 권역*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총 8개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그린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등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	100개사 내외	[참고 3]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⑦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 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 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①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ㅇ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포함)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예시)	6구시전급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7,000만원 (100%)	4,900만원 (70%)	700만원 (10%)	1,400만원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4 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22. 2. 25. ~ 3. 24.
- □ 신청기간: '22. 2. 28. 09:00 ~ '22. 3. 24. 16:00

< 신청 시 유의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u>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u> 신청 불가), 다만 16:00까지 <u>1단계(약관동의)</u>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한 신청자에 한해 18:00까지 신청제출 유예시간 부여
-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자는 <u>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별첨 2]</u>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신청, 접수마감 ('22.3.24.(목), 16시)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u>기업인증</u>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u>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을 사용,</u>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사업계획서 * 각종 증빙(신청자격, 가점 등 제반) 포함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업로드 * '증빙서류 제출목록 참조'	신청기간 내 K-Startup으로 온라인 업로드
② 기타 서류(서류평가면제자 증빙자료)	증빙서류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u>30MB</u> 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2단계(서류→발표)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및 안내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주관기관은「통합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자격 요건을 검증한 자로 평가위원을 위촉, 평가가이드를 준수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창업기업 확인서 등 사업자 업력 관련 서류제출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 안내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온라인 평가 시, 주관기관이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예정
-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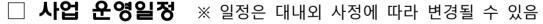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 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 및 노하우 등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은 [참고 2] 참조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u>최종선정은 발표</u>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공 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D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평가문의 : 신청 주관기관
′22.2.25.(금)	-	'22.2.28.(월) ~ '22.3.24.(목)		~′22.4월 —
협약체결		협약준비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주관기관별 발표
 ~'22.5월 중순	•	~'22.5월 중순		~'22.5월 초
D				
사업수행	_	중간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2.5월 ~ '23.2월 (약 10개월)	•	'22.10월 경		′23.3월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동일·유사하게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라도, 상호 간에 사업계획서를 표절 또는 모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대상 모두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 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중간(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중심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내용, 의무사항, 선정규모 등 세부 지원사항은 동 사업과 상이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참고 6]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참조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 (일시) '22. 3. 8.(화) 14:00 예정
- (방식) Youtube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 영상 송출 * 접수 마감 시까지 사업설명 영상 공개

□ 문의처

- 고객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 : 국번없이 1357
- o 주관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 [참고 3] 참조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시	·업을 개시한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창업아님	
	상속/증여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창업아님	
개인기업		이종창업 -		창 업
게인기법	기조 케이시어되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II EI	<u> </u>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창업(시	·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아님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ㄷᅎᆈᇵ		개인사업자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창업자 지위승계
		이종창업	_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도조차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유지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유지	창업아님
	조직변경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참고 2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서류평가 가점) 신청기간 내 제출된 증빙에 한하여 인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가점	비고
1)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명의 가입증서 제출 필요	1점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점	
3)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최대
4) 최근 2년 이내('20~)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각 1점 (최대 2점)	3점
5)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참고5] 참조)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⑤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쏏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② 이차전지, ②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③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1점	

- (감염병 관련 가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 **(서류평가 면제)** 관련 증빙 및 필요서류 등은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한 자에 한해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20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2)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 당시 예비재창업자였던 경우에 한함 (단,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3)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단, '21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아이템 핵심 요소 일치 여부 판단 예정이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운영
4) '20년 청청콘('선배 청년이 후배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파이널 피칭 수상팀 (단, '20년 청청콘 파이널 피칭에 진출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5) 민간기관(KB금융그룹, 신한DS, KB국민카드,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6) '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초기) '최우수' 판정 기업	

* '서류평가 면제'는 상기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창업진흥원이 별도 안내하는 '신청 희망주관기관 수요조사' 등에 따라 동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3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사업화 지원			
권역	주관기관명	총 지원 규모 (①+②)	① 일반분야	② 그린분야	담당자 연락처
	고려대학교	23	19	4	02-3290-4814
	건국대학교	20	17	3	02-450-3138
	서울대학교	20	17	3	02-880-2223
서울	씨엔티테크	20	17	3	02-3152-8648
	엔피프틴	20	17	3	070-4169-5616
	연세대학교	20	17	3	02-2123-4412
	인덕대학교	20	17	3	02-950-7095
	수원대학교	24	20	4	031-229-8714
	성균관대학교	21	18	3	031-290-565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	18	3	031-8041-0987
	가천대학교	20	17	3	031-750-6926
경인	경기대학교	20	17	3	031-249-8667
	인천대학교	20	17	3	032-835-9642
	인하대학교	20	17	3	032-860-9237
	단국대학교	18	16	2	031-8005-2864
	인천테크노파크	18	16	2	032-250-2162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20	17	3	033-649-7198
	충북대학교	24	20	4	043-261-3443
	한밭대학교	23	19	4	042-828-8665
충청	순천향대학교	20	17	3	041-530-4973
50	한국수자원공사	20	17	3	042-629-2549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8	16	2	042-385-0683
	한남대학교	18	16	2	042-629-8562
	광주대학교	23	19	4	062-670-2161
	순천대학교	21	18	3	061-750-5433
호남	군산대학교	20	17	3	063-469-8965
	전주대학교	20	17	3	063-220-2842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8	16	2	062-710-0454
	울산대학교	20	17	3	052-259-2108
도나	동서대학교	18	16	2	051-320-2961
동남	부경대학교	18	16	2	051-629-7473
	영산대학교	18	16	2	055-380-9523
대경	경북대학교	20	17	3	053-950-7657
네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8	16	2	053-359-3625
제주	넥스트챌린지	18	16	2	064-732-0039

^{*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중점지원 분야, 특화프로그램 등)

참고 4 중기부 창업시업화지원시업 중 동 시업 지원 제외 시업 목록

중기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년~'22년)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수행한 자는 동 사업 신청가능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워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워사업, 연구워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사업화)
- 창업인턴제 (사업화)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고 5

'22년도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제품 개요

전략분야	제품(개)
인공지능	신약개발 AI 플랫폼,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AI 창작 플랫폼, 인공지능 소재 설계 시스템 등 9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인텔리전스 플랫폼, 영상, 음성,문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등 8개
5G⁺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 5G 기반의 스몰셀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B2B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 5G SA 스몰셀 기지국 등 5개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대규모 트랜잭션 데이터 고속 저장 및 분석 기술,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 및 플랫폼, STO(Security Token Offering) 공공 플랫폼 등 7개
서비스플랫폼	실시간 공연 VR 중계 플랫폼, 비대면 교육 플랫폼, 금융 서비스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원격협력진료 플랫폼,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 등 11개
실감형콘텐츠	메타버스 초등학교 구축, 공간정보 기반 가상훈련 시스템, AR 매뉴얼, 실시간 인터렉션 콘텐츠, AR 글래스 등 7개
드론·개인이동수단	운송/배달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용 드론, 재난 모니터링 드론, 저고도 무인비행체 교통 관리 시스템 등 6개
지능형로봇	물류 배송 지능형로봇, 살균/방역 지능형로봇, 큐레이팅/안내 서비스 로봇, 협업형 산업 현장 작업지원 로봇 등 7개
스마트제조	Hyper Connected SCM 플랫폼, 디지털트윈 생산시스템, 산업용 지능형 센서, 중소기업용 스마트제조 플랫폼, 중소기업용 On-Site 엣지 시스템 등 15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스마트자율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자율주행 정밀지도 시스템 등 6개
시스템반도체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섀시제어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등 6개
미래형선박	자율(무인)운항 첨단감지 장비, 선박충돌 감지 시스템, 전기 추진 선박용 기자재, 복합 경량소재 적용 중·소형 선박, e-navigation용 기자재 등 7개
재난/안전	loT 기반 안전 앱/서비스,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공장용 환경안전 솔루션, 식품 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등 9개
스마트시티	스마트 미터(AMI),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등 7개
스마트홈	미세먼지 실내 정화 시스템, IoT용 스마트홈 센서, 홈 IoT 헬스케어 가전, 공간제약이 없는 AI 비서형 스마트홈 서비스,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등 7개
바이오	유전자, 세포 및 조직 치료제, 분자/면역 진단 시스템,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시스템,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등 8개
의료기기	지능형 영상진단 원격진료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상처 케어 의료기기 (wound care medical device),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등 9개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제품(HMR 제품), 건강기능성 식품, 특수용도식품(케어푸드) 대체식품, 반려동물 식품/기능성 사료 등 5개
전기·수소차	수소차 부품 국산화,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용도선택형 초소형전기차 플랫폼, 전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 8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등 10개
이차전지	폐 배터리 재활용(Recycle), 고전압/고출력에서 고온수명 안정화 전해액 첨가제, 전기자 동차용 폐 배터리 재사용(Reuse),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고에너지밀도를 갖는 전고체전지 등 6개
자원순환·에너지재활용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온실가스감축, 연소공정 폐열회수 및 재활용,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기술, IoT 기반의 가공 공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 폐기물 고형 연료화 등 7개
CCUS	CO2 중소형 포집/전환 공정, CO2 포집제, CO2 화학적 전환 기반 고분자, CO2 광물화소재, CO2 전환 바이오매스 생산 등 8개
소계	178

[※] 전략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6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예비-초기-도약 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강화
 - * 창업중심대학은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기관이며,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이 기존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예비, 초기, 도약패키지)과 지원사항과 상이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창업중심대학 사업별 별도 모집예정)
 - 일부 T/O는 권역 내 (예비) 지역기업·청년 창업가에 배정 예정

구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예비창업자	창업(사업 개시일) ~ 3년 이내	창업 3년 ~ 7년 이내	
지원규모 (1개 주관기관)	510개(85개)	240개(40개)	1507 (257)	120개(20개)	

□ 지원내용

- o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각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 프로그램) 각 사업별 특화(기본) +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사업별 기본 프로그램 지원				
기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 1:1 전담 멘토링제	•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 창업 교육	• 투자유치, 원스톱상담창구	특화 프로그램		
자율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가	정신 촉진' 관련 자율 프로그램 지원	원(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		
	창업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역량 강화		
	• 권역 내 타 대학 등과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재창업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 행사 개최 등	• 전문 창업강좌, 컨설팅 등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창업중심대학 지정현황(6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지정현황	1	1	1	1	1	1	_
기관명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6

*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문의는 상반기 중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